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완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개원 예정일	전화번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4. 건축물대장 등본(조건부 등록 신청 당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만 해당하고,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의 서류는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